유진투자증권

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미드스몰캡 박종선
Tel. 02)368-6076 / jongsun.park@eugenefn.com

핀테크산업

Recommendations

- ✓ 카카오 (035720.KS)
- ✓ NHN 엔터 (181710.KS)
- ✓ NAVER (035420.KS)
- ✓ 민앤지 (214180.KQ)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전망

■ **정부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

지난 25일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및 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함

1) 금융결제시스템 혁신적 개방: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 하는 등 **금융결제인프라를 폐쇄형 → 개방형으로** 개편. **현행 수수료 400~500원/건을 10% 수준으로 조정 예정**. 향후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은행과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여 독자적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체계 전면 개편: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 →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오직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의 결제, 송금이 가능.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 내 후불결제 허용**(이동통신사 소액 후불결제 업무 중. 약 50만원/월)

3) 규제, 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및 범용성 제고 지원. **간편결제(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500만원대로** 확대 예정.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 허용**.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세제 인센티브 검토 추진** 등

■ **핀테크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핀테크 관련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인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긍정적**임. 특히 후불 시장 진출, 교통카드 시장 진출은 물론 선불 충전금액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융플랫폼사업자로의 진화도 가능할 것임**

정부의 혁신방안이 실행되면서 **신용카드사와 은행은** 핀테크 결제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난해 결제업체들이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800억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핀테크 관련 기업의 수혜 예상**

1) 카카오(카카오페이), NHN엔터(페이코), 네이버(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플랫폼 보유기업: 결제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인하로 수익성 개선 전망

2) 세틀뱅크(민앤지 자회사)와 같은 간편결제대행사업자: 간편결제 시장의 충전금액 확대, 후불시장 진출은 물론 수수료 인하까지 반영하면 실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예상

3)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뱅킹 사업자: 직불, 간편결제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인터넷뱅킹 고객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망

도표 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전금업) 체계 전면 개편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①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④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⑦ 낡은 규제 개선
② 오픈뱅킹 법제도화	⑤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⑧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③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⑥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⑨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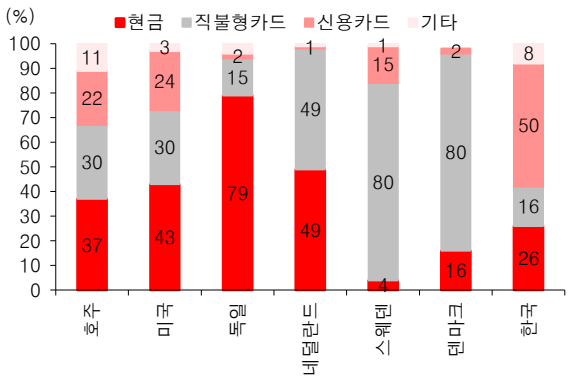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1단계 ('19년 시행)	2단계 ('19년 추진)	3단계 (중장기 검토·추진)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결제망 이용** (은행 협조 및 금결원 규약 개정)	오픈뱅킹 법제도화 → 차별없는 은행결제망 이용 제도적 보장 (전금법 개정)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 은행 등 금융회사 같이 직접 금융결제망 참가 (전금법 및 한은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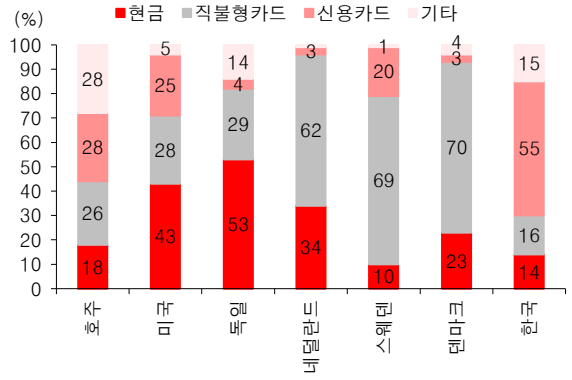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주요국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이용건수기준) : 여전히 높은 신용카드 사용 의존도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주요국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금액기준) : 직불 및 간편결제 시장 확대가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5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관련 은행권 합의 내용

참여대상확대	(이용기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 →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 은행**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 2개 추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 여부 검토	
이용료 조정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원칙1) **현행 400~500원/건 대비 상당폭 인하. 1/10 수준**
		(원칙2)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 적용**
		(원칙3)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
시스템 운영 개선	1.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증설	
	2.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	
	3. 보안성 기준마련,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 차등적 적용	
실무협의회를 통해 연내 추진	1.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2019년 1분기내 세부사항 확정	
	2. 전산구축 및 시스템 안정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후 일정 기간 이후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6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주요과제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①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결원 규약 개정 등('19년)**	금융위·금결원
	② 오픈뱅킹 법제도화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③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전금법 및 한은규정 개정 등 (중장기)	금융위·한은
2. 금융 결제업체계 전면 개편	④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⑤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⑥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9.2분기)**	금융위
3. 규제·세제 시장 친화적개선	⑦ 낡은 규제 개선	**간편결제 수단 이용·충전한도 확대**	**전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19.2분기)**	금융위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19.2분기)**	기재부·금융위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제공 허용	여전법 개정 등 ('19.3분기)	금융위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관련 규제 완화	**여전법 유권해석 등 ('19.1분기)**	금융위
	⑧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교통사업자 협의 ('19.1분기)**	금융위
		제로페이 연계 강화	지속 추진	중기부·금융위
	⑨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필요시 세법개정 추진 ('19년)**	기재부·금융위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7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종합적 기대효과

		현행	개선
인프라	결제 문화	-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 문화	**- 비용은 낮고, 편리성은 높은 직불·간편결제 문화**
	결제 방식	- 실물카드 중심	- QR코드, NFC, 바이오 등 다양한 결제 방식
	결제 시장	- 단순 마케팅 경쟁	- 기술·서비스 혁신 경쟁
소비자	편리성	- 은행앱으로는 해당 은행계좌에서만 결제·송금 가능 - 핀테크기업 앱은 소수에 불과 → 선택권 부족	**-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 등 가능** - 은행과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금융플랫폼 선택 가능
	혜택	- 결제수단이 한정적이고 소비자 혜택도 제한적	- 결제 수단이 다양화 되고, 소비자 이용 혜택도 강화
	외국 결제	- 해외에서 국내 간편결제 이용 불가(국내결제 전용)	**- 해외에서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 이용 가능**
	대중교통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이용 한도	- 200만원 → 가전제품 등 내구재 결제에 제한	**- 300~500만원 → 결제 가능 범위 확대**
	후불 결제	- 불가(일시적 자금 부족시 결제 불가)	**- 소액 범위내 가능(일시적 자금부족시 결제 가능)**
판매자	결제시 혜택 제공	-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불가	-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가능
	단말기 보급	-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는 가맹점이 직접 구입	-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은행		- 자기 고객에 대해서만 결제·송금서비스 가능	- 자기고객 外 타은행 고객에 결제·송금서비스 가능 -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금융플랫폼 가능
핀테크기업		- 은행결제망 이용을 위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고, 높은 비용을 지불	**- 공동 결제시스템을 통해 별도 제휴 없이 저렴하게 은행결제망 이용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18.12.31 기준)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괴리율(%) 최고(최저) 주가대비
2017-03-21	Buy	54,100	1년	-28.0	-23.3
2017-04-06	Buy	54,100	1년	-27.4	-23.3
2017-05-22	Buy	27,050	1년	-19.9	1.7
2017-05-31	Buy	27,050	1년	-19.3	1.7
2017-06-08	Buy	27,050	1년	-19.1	1.7
2017-08-09	Buy	27,050	1년	-14.4	1.7
2017-08-24	Buy	27,050	1년	-12.9	1.7
2017-11-16	Buy	27,050	1년	-6.5	1.7
2017-12-06	Buy	35,000	1년	-30.0	-17.7
2018-01-29	Buy	35,000	1년	-32.0	-24.1
2018-03-02	Buy	35,000	1년	-31.6	-28.6
2018-05-03	Buy	35,000	1년	-31.2	-28.6
2018-05-16	Buy	31,000	1년	-29.2	-21.1
2018-08-08	Buy	27,000	1년	-26.9	-14.3
2018-11-15	Buy	27,000	1년	-27.1	-14.3
2019-02-27	Buy	27,000	1년		

민앤지(214180.KQ)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